

#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101 7 703 991-2
가	02-2110-4-0147

( 가 가 , 가 (改作), (轉載) )



( )

가

.

30 30 6  
: (051)632-3300 FAX : (051)632-0900

(                    )                    가

가	가	가
	가	(                    )
	(                    )	가
		(                    )

가	( \309,000,000. - )				
		가			
	-	가	가		
(                    )	(                    :                    )	가	-		
			2021. 10. 07	2021. 10. 07	2021.10.07

가	(公簿)(                    )				가	
					가	
	2		2		-	309,000,000
						\309,000,000. -

가	가	가
	가	(                    )
	:	가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대상물건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롯데마트 웅상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서창 아크리티 제 101동 제7층 제703호 외 1개호에 대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 2. 대상물건 현황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991-2번지 서창아크리티						
이용상황	아파트	사용승인일자	2019. 11. 06			
건물의 구조 및 층수/ 시공 및 관리상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4층 / 보통	배후지의 상태 및 규모	보통/ 48세대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기 타	-			

기호	구 분	전유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지분(㎡)	전용율(%)
가	제101동 제7층 제703호	54.4543	38.6855	93.1398	35.2295	58.5%
나	제101동 제7층 제704호	53.9782	38.8275	92.8057	34.9215	58.2%

###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2021년 10월 07일임.

###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대상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1년 10월 07일임.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조건

### 1. 기준가치 결정 및 이유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토지 등(이하 “대상물건”이라 한다)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목적에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 2. 감정평가 조건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특별한 감정평가의 조건은 없음.

### 3. 특이 및 유의 사항

가. 본건 기호(가), (나) 구분건물은 현장조사시 점유부분 등을 통해 위치확인 하였으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됨.

나.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거래관행상 일체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 행 요청에 의거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의 가격을 배분할 경우의 금액을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별도 부기하였음.

다. 본건 기호(가) 구분건물은 현장조사시 이해관계인의 폐문·부재로 인하여 부득이 내부확인이 곤란하여 인근 유사물건 및 관련공부(집합건축물대장등본상 용도), 외부관찰 등에 의한 통상적인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였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감정평가 방법의 적용

가. 구분소유권의 평가방법은

- ①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유사거래사례를 대상 부동산의 현황에 맞게 보정·비교하여 구분소유권의 가액을 구하는 거래사례비교법,
- ② 대상 구분소유권이 장래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가액을 구하는 수익환원법,
- ③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으로, 건물은 원가법으로 1동 전체의 가격을 구한 후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요인을 반영하여 대상구분소유권에 배분하는 방법 등이 있음.

### 2.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평가방법과 합리성 검토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대상물건은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체로 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원가법의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이고 적정한 수익 및 환원율의 파악이 어려워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한 바,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3. 그 밖의 감정평가 관련 사항

없 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

### 가. 평가 개요

대상물건은 위치, 부근의 상황, 규모,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층별·항별·위치별 효용요인, 인근 유사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음.

### 나.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한 자료

#### (1)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

(경상남도 양산시)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 분	거래사례 1.	거래사례 2.	거래사례 3.	거래사례 4.
소재지·건물명칭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991-2 서창아크리티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호수	제101동 제13층 제1301호	제101동 제3층 제302호	제101동 제6층 제604호	제101동 제10층 제1003호
사용승인일	2019. 11. 06.			
전유면적 (㎡)	61.2183	61.7851	53.9782	54.4543
거래가액	152,000,000	155,000,000	140,000,000	140,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2,483,000	@2,509,000	@2,594,000	@2,571,000
거래시점	2020.01.20	2020.02.03	2020.01.28	2021.06.09
비 고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유사 물건의 평가선례

(경상남도 양산시)

(자료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구 분	평가선례 1.	평가선례 2.	평가선례 3.	평가선례 4.
소재지 · 건물명칭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991-2 서창아크리티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 · 호수	제101동 제4층 제401호	제101동 제3층 제302호	제101동 제14층 제1402호	제101동 제8층 제803호
사용승인일	2019. 11. 06.			
전유면적 (㎡)	61.7851	61.2183	60.5068	54.4543
감정평가액	161,000,000	163,000,000	226,000,000	193,000,000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	@2,606,000	@2,663,000	@3,735,000	@3,544,000
기준시점	2020. 11. 25.		2021.01.13	2021.08.19
평가목적	경매평가		경매평가	경매평가
비 고	경매결과 : 대기		경매결과 : 취하	경매결과 : 취하

## (3) 정상가격 수준 등

기준시점 현재 대상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가격수준은 2,850,000원/㎡ ~ 2,900,000원/㎡(전유면적) 내외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최근 1년간 경매 낙찰가율

<자료출처: 지지옥션>

용도	소재지	기간	낙찰건수	낙찰가율(%)	비고
아파트	경상남도 양산시	최근1년	181건	95.96%	-

## 다.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 (1) 비교 거래사례 선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위치하며 거래사례로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있는 <거래사례 3.>을 선정하였음.

(경상남도 양산시)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구분	거래사례 3.	비고
소재지 · 건물명칭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991-2 서창아크리티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 · 호수	제101동 제6층 제604호	
사용승인일	2019. 11. 06.	별지
전유면적(m <sup>2</sup> )	53.9782	"위치도"
거래가액	140,000,000	표시
전유면적 기준단가 (원/m <sup>2</sup> )	@2,594,000	
거래시점	2020.01.28	
비고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사정보정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 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 (1.000)

## (3) 시점수정

(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나) 대상 구분건물 기호(가), (나)의 시점수정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자료를 검토하였으나, 지가변동률은 토지에 대한 자료로 적용하지 않고,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참조하여 아래와 같이 시점수정함.

(다) 경상남도 양산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1.06 = 100)

(자료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년	92.2	92.3	92.5	92.5	92.4	92.6	93.1	93.4	93.5	93.6	94.2	96.1
2021년	97.1	97.7	98.1	98.7	99.2	100	100.6	101.5	-	-	-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라) 시점수정치

“거래사례 3”의 거래시점(2020. 01.) 적용 지수	92.2
대상 물건의 기준시점(2021. 08.) 적용 지수	101.5
시점수정치 : 기준시점 지수 / 거래시점 지수	$101.5 / 92.2 \approx 1.10087$

※ 거래시점 : 2020.01.28, 2020년 01월 지수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1.10.07, 2021년 10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으로, 2021년 08월 지수를 적용함.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개별요인(가격형성요인) 비교

대상물건 기호 (가), (나) / 거래사례 (3) 과 비교

요 인	세 항 목	비 고	격차율
단지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대등함.	1.00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단지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대등함.	1.00
	단지 내 총 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 내 면적구성(대형, 중형, 소형)		
	단지 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호별요인	층별 효용	대등함.	1.00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등함.	1.00
<b>격차율 계</b>			<b>1.000</b>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가) 단가 결정

위 자료 및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산식 = 사례단가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제요인 비교								
기호	구 분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개별요인 비교	산정단가 (원/㎡)	적용단가 (원/㎡)	비고
가	제101동 제7층 제703호	2,594,000	1.00	1.10087	1.00	2,855,657	<b>2,855,000</b>	-
나	제101동 제7층 제704호	2,594,000	1.00	1.10087	1.00	2,855,657	<b>2,855,000</b>	-

### (나) 시산가액 결정

산식 = 면적 × 단가						
기호	구 분	전유면적(㎡)	단가(원/㎡)	산정가액(원)	결정가액(원)	비고
가	제101동 제7층 제703호	54.4543	2,855,000	155,467,027	<b>155,000,000</b>	-
나	제101동 제7층 제704호	53.9782	2,855,000	154,107,761	<b>154,000,000</b>	-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감정평가액 결정

###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

기 호	거래사례비교법(원)	비 고
가, 나	309,000,000	-

### 2. 시산가액의 검토 및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대상물건의 제반 입지조건과 유사물건의 거래사례, 방매사례, 평가선례의 가격, 인근지역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및 가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결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며, 감정평가 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3. 감정평가액 결정

기호	구 분	전유면적(m <sup>2</sup> )	감정평가액(원)	비고
가	제101동 제7층 제703호	54.4543	155,000,000	-
나	제101동 제7층 제704호	53.9782	154,000,000	-

# 가

					(㎡)		가	
1 가	[ 5 15]	991-2	( )	1 14				
		991-2	( )		1,793			
			7 703		54.4543	54.4543	< 155,000,000	가
					35.2295	35.2295		(
			1		-----	-----		+
					1,793	1,793	>	=
							24,800,000	
							130,200,000	93.1398㎡)
			( )					
			7 704		53.9782	53.9782	< 154,000,000	가
					34.9215	34.9215		(
			1		-----	-----		+
					1,793	1,793	>	=

# 가

					(㎡)	가	
							92.8057㎡)
						24,640,000	
						129,360,000	
						<b>₩309,000,000.-</b>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 1. 위치 및 부근의 상황

본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롯데마트 웅상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기존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각종근린생활시설 및 대형마트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제반입지조건은 양호함.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 3. 건물의 구조

구분	내용	비고
구조 / 규모 등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 지상14층 건물 내 / 제7층 제703호 외 1개호	-
외벽	인조석 붙임 및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
내벽	벽지 등 마감.	기호(가) 폐문·부재
바닥	강화마루 등.	기호(가) 폐문·부재
창호	샤시창 구조임.	-
관리상태	2019년 11월 06일자로 사용승인 되었으며, 현상은 보통임.	-

## 4. 이용상태

구분	내용	비고
가	아파트로 이용중임.	폐문·부재
나	아파트로 이용중임.	-

#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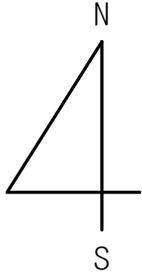
## 5. 부대설비

구분	내용	비고
위생·급배수설비	유	-
냉·난방설비	유	-
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유	-
승강기설비	유	-
주차장설비	지하주차장 소재	-
기타설비	-	-

## 6.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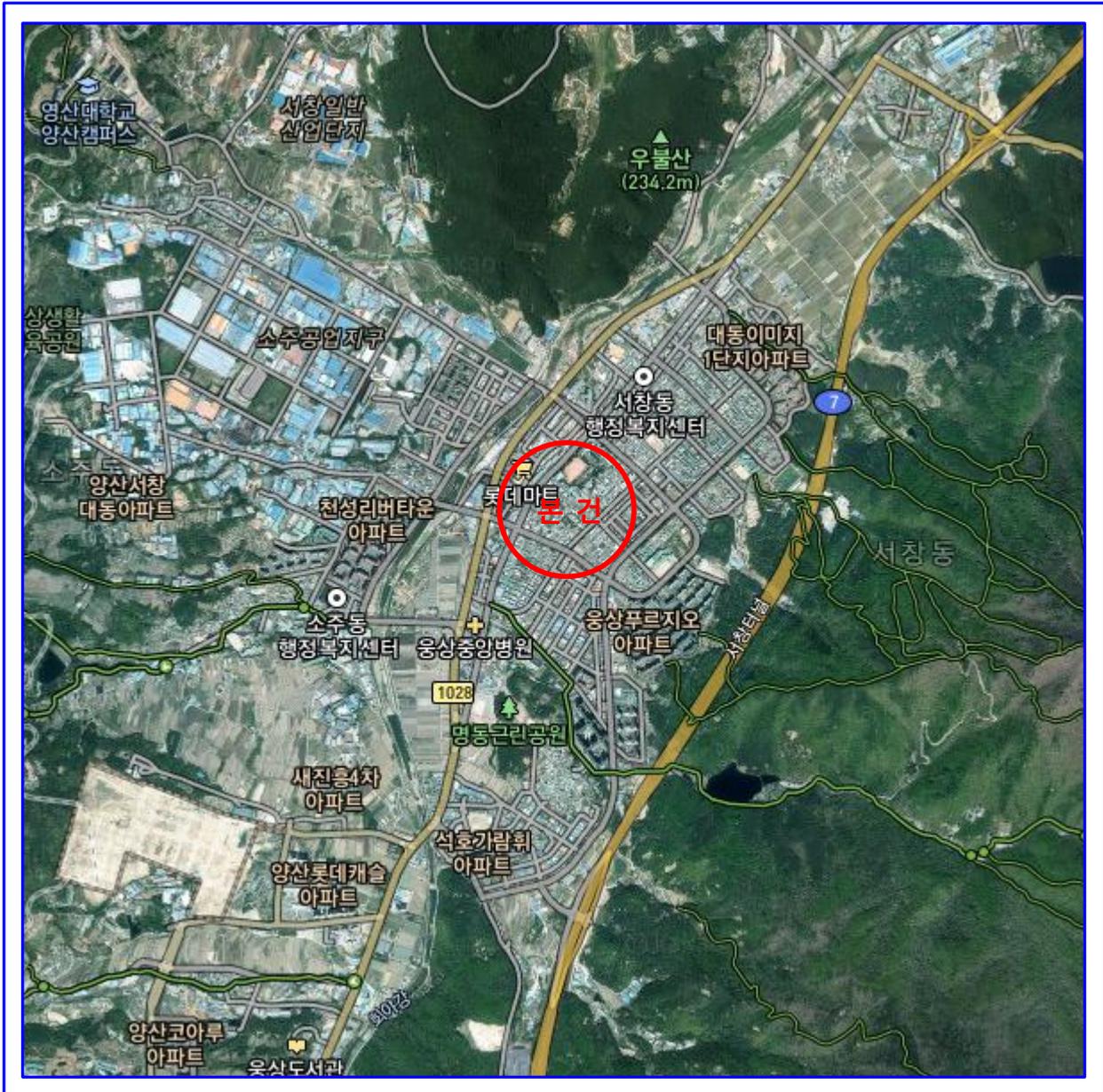
없 음.

# 광역(위성)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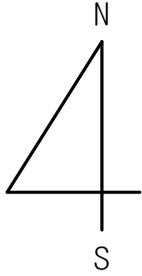


본건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일대



# 상세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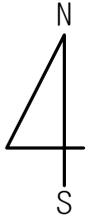


**본건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991-2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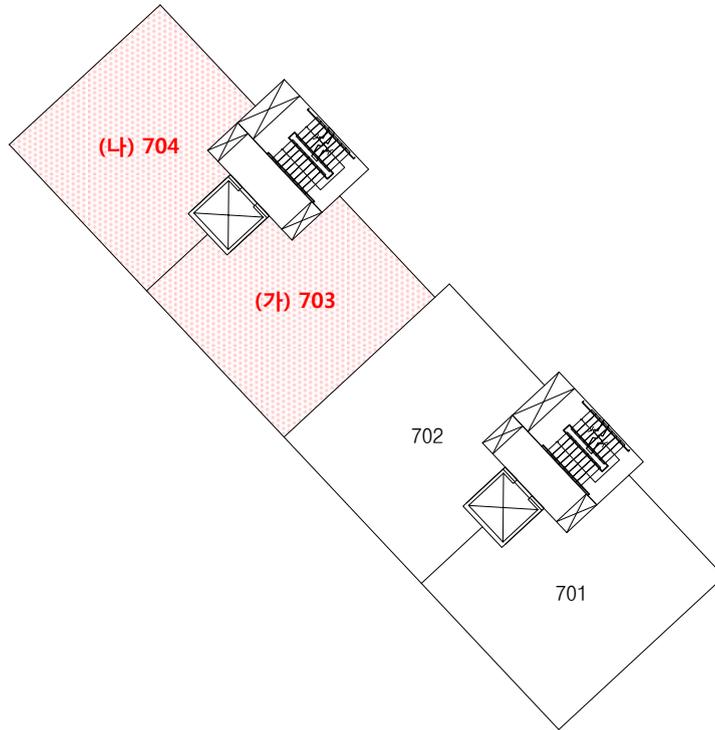
[ 본 건 명 : 서창아크리티 제101동 제7층 제703호 외 ]



# 호 별 배 치 도



## 7 층 호 별 배 치 도 (None Scale)



[ 서창아크리티 제101동 제7층 제703호 외 ]

# 사진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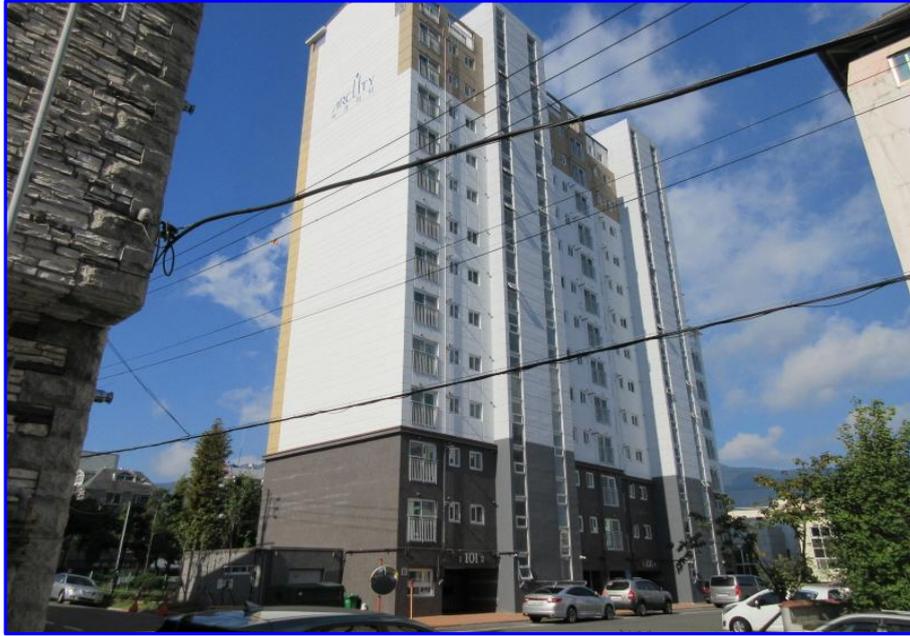


사진 설명	촬영장소	촬영일자
본건 전경	본건 남동측 인근에서	2021. 10. 07.



사진 설명	촬영장소	촬영일자
본건 전경	본건 남서측 인근에서	2021. 10. 07.

# 사진용지



사진 설명	촬영 장소	촬영 일자
(가)	본건 내부에서	2021. 10. 07.



사진 설명	촬영 장소	촬영 일자
(나)	본건 내부에서	2021. 10. 07.

# 사진용지



<b>사진설명</b>	<b>촬영장소</b>	<b>촬영일자</b>
본건 내부	본건 내부에서	2021. 10. 07.



<b>사진설명</b>	<b>촬영장소</b>	<b>촬영일자</b>
본건 내부	본건 내부에서	2021. 10. 07.

# 사진용지



사진설명	촬영장소	촬영일자
본건 내부	본건 내부에서	2021. 10. 07.



사진설명	촬영장소	촬영일자
본건 내부	본건 내부에서	2021. 10. 07.